전자출입명부 활용 안내(안) (이용자 및 시설관리자용)

2020. 6. 10.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목 차〉

Ι	•	전자출입명부 개요	
	1.	전자출입명부란?	1
	2.	도입배경	1
	3.	법적근거	1
	4.	사용절차	2
	5.	사용대상 시설	4
	6.	사용 기간	6
	7.	사용 예외 규정	6
	8.	의무시설 중 미사용시설에 대한 처벌규정	6
П	. 7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활용 절차	
	1.	이용자	7
		가. QR코드 발행 진입경로	7
		나. 최초 QR 발행(동의) 이후 QR 발급 절차	12
		다. 시설 출입 시 QR 생성 및 스캔	12
	2.	시설관리자	13
		가. 준비사항	13
		나. 필수환경	14
		다. 시설관리자용 앱설치 절차	15
		과 지의 드로	

마. 시설관리자용 앱을 활용한 입장 절차 20

Ⅰ 전자출입명부 개요

1. 전자출입명부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방지 및 방역조치를 위해 그간 수기(手記)로 작성되어오던 업소 등 **출입자 명부를 개선**
 - 정보기술(IT)을 활용, QR코드에 기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개발· 배포한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지칭함

2. 도입 배경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 위험시설(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 발견**
 - * 감염병예방법 상 '집합제한명령'으로서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등 준수사항 이행을 명령 (3.22)
 - **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명부 상 인원 4,961명 중 <u>41.0% (2,032명)만</u> 유선 통화 가능
- 허위기재 및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수기 기재 방식을 개선, QR 코드 등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방문자 정보관리 필요
-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의 이용자 특정, 연락처 확보, 감염 차단을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추진

3. 법적 근거

○ 전자명부 동의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한 것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근거하여 개인 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할 수 있음
-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 출입명부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감염병예방법」제76조의2제1항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 관리본부장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가능하며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함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5.8. 시행한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유흥시설 등은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 이행을 신속 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명부작성 제도가 도입

4. 사용 절차



- ① (이용자) 시설 이용시 QR발급회사(NAVER 등)로부터 앱으로 QR코드 발급 → 발급받은 <u>개인별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u> 휴대폰으로 제시
 - * QR 코드 발급관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NAVER 등 상용 QR 코드 앱 운용회사 협력
- ② (시설관리자)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증)하고,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여 방문 기록* 생성
 - * 특정 QR코드를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인식한 시간과 시설명만 기록되고, QR코드가 어떤 이용자의 것인지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인식 불가
- ③ (QR발급회사) 기존 앱에 QR코드 생성 기능 추가* → 앱에서 생성된 개인별 QR코드 정보를 서버 내 저장·관리
 - * 상용 앱 운용회사(NAVER 등)에 대해 복지부 인증을 거쳐 기존 앱 내에 QR코드 생성 기능 탑재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간단한 동의 절차만으로 기능 활용 가능
- ④ (사회보장정보원)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수집된 시설정보 및 이용자의 방문 기록(QR코드 인식 기록)을 서버 내 저장·관리
- ⑤ (방역당국) <u>확진자 발생 시</u>,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확진자 경유 시설에 대한 방문 기록과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를 사회보장 정보원에 요청, 매칭* 결과를 회신받아 신속한 방역조치에 활용
 - * (ex) 방문 기록(A시설에서 22시~24시 인식된 QR코드 정보) + 개인정보
 (QR코드 별 이름, 연락처 등 정보) ⇒ A시설에 22시~24시 방문한 사람의
 이름, 연락처 등 정보를 통하여 접촉자 명단 파악 가능

- ※ [참고] 전자출입명부 관련 개인정보 보호조치
- (개인정보관리) ^①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QR코드로 암호화·수집→^②분산 보관·관리→^③자동 파기로 우려 최소화
 - *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 (보관) 평상시에는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NAVER 등과 사회 보장정보원에 암호화하여 분산 보관 → 확진자 발생 등 필요시 에만 결합
- **(파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잠복기(14일)의 최대 2배인 **4주** 이후 **자동 파기**

5. 사용 대상 시설

-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시설"(집합제한명령 대상 등)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의시설"로 분리하여 적용
- (의무시설) 집합제한명령(중수본·지자체) 시설 포함 고위험 시설 (8개 업종)*
 - *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을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10~12점에 해당하는 시설
- (임의시설)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권고한 시설 또는 자발적으로 적용하는 시설

※ [참고]

1.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

주요 지표		위 험 도	
구표 시표	낮음(0점)	보통(1점)	높음(2점)
공간의 밀폐정도	대체로 상시 환기 가능	일정수준 환기 가능	대체로 환기 불가능
이용자간 밀집정도	대체로 거리두기 가능	일정수준 거리두기 가능	대체로 거리두기 불가능
공간 이용자의 규모수	소규모 (평균 10명 미만)	중규모 (평균 10명~100명 미만)	대규모 (평균 100명 초과)
비말 발생 가 능 성	거의 없음	일상적 대화 수준	적극적 비말 생성
이용자의 체류 시간	수분~수십분 내	1시간 내외	수 시간 또는 그 이상
방역수칙 준수 곤란 여부	대체로 준수 가능	일정수준 준수 가능	대체로 준수 불가능

2.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고위험시설

('19년말 기준 다중이용업 현황, 소방청)

업종	근거 법령	생활 명칭	현황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	헌팅포차	서울 15개소
글만듬색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7호 타목 7)의 단서(춤 허용업소)	감성주점	84개소
유흥주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라목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26,886개소
단란주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	노래클럽 등	12,203개소
콜라텍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콜라텍	502개소
노래연습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31,696개소
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줌바댄스, 태보, 스피닝 등	약 9천개소
스탠딩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		1,602개소

6. 사용 기간

○ 국내 유입된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및 '경계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함

7. 사용 예외 규정

○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 수기장부 작성 (신분증 대조)

8. 의무시설 중 미사용시설에 대한 처벌규정

- 유흥시설 등의 경우,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에 근거하여, 보건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Ⅱ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활용 절차

1. 이용자*

* 시범사업에 참여한 네이버앱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다른 협력기관의 참여시 추가될 수 있음

[가. QR 코드 발행 진입 경로]





③ QR체크인 클릭



④ QR 체크인에서 사용자님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항목에서 <u>확인</u> 클릭



⑤ 동의항목에 클릭 후, 녹색 화살표의 확인 클릭



 ⑥ 휴대전화 SMS 인증창이
 나오면, 휴대폰 번호를 통한
 인증을 진행
 (PASS 혹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도 가능함)



[사용자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⑦ 별도 보호자 동의가 필수 (최초 1회만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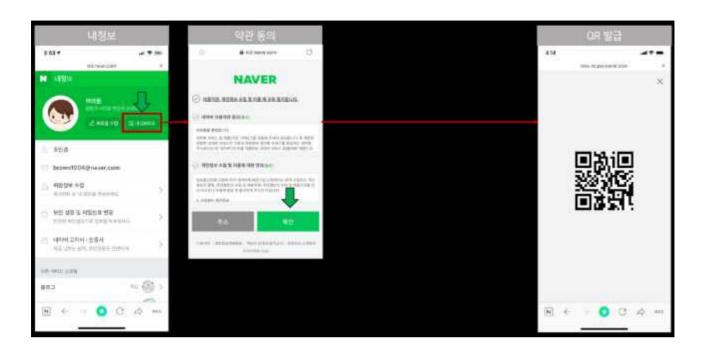
⑧ 전자출입명부 QR 코드 발행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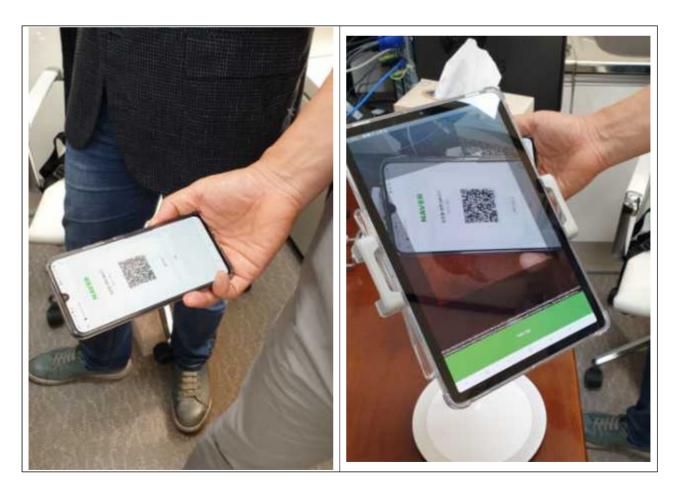
[QR 코드는 1회용으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5초만 유효하며, 해당 시간을 넘어서면 옆 화면이 나옴]

⑨ <u>재시도</u> 버튼을 누르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바로 QR코드 생성

[나. 최초 QR 발행(동의) 이후 QR 발급 절차]



[다. 시설 출입시 QR 생성 및 스캔]



2. 시설 관리자

가. 준비사항

- (필수) LTE, WiFi 등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휴대폰* 혹은 태블릿PC 혹은 기타 장비**), 휴대폰 충전기(혹은 태블릿PC 충전기), 대표자 (혹은 방역관리자) 본인 명의 휴대폰, 사업자등록증
 - * QR 코드 스캔에 활용되는 단말기는 입장객 관리 시 개인적인 통화 등이 어려울 수 있고 쉽게 방전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가 내장된 중저가 휴대폰(혹은 태블릿, 전화번호가 없는 공기계, (WiFi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통신사 가입 필요 없음)) 구입 권고, 단 안드로이드 6.0 이상 혹은 iOS 11 이상을 지원해야 함(최근 3-4년 내출시된 대부분의 장비는 문제없이 사용 가능). 2개 이상의 시설 출입구를 활용중인 시설의 경우 해당 출입구 개수만큼의 휴대폰(혹은 태블릿PC)가 필요할 수 있음
 - * 대규모 인원이 입장하는 시설의 경우, 스캐너가 내장된 PDA 형태(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음
- (선택) 휴대폰 혹은 태블릿 PC 거치대*
 - * 시설 입장 손님이 직접 QR 코드를 인식시킬 수 있도록, QR 코드 인식용 휴대폰(혹은 태블릿 PC)을 거치할 수 있는 스탠드(아래 그림 참조)



- (미지원 장비) '20.5월 현재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Windows 운영체계를 지원하지 않는 관계로 Windows 기반 POS 또는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치형 2D 레이저 스캐너(QR 코드 인식 가능)'는 사용불가



나. 필수 환경

- (네트워크 연결 필수) 본 전자출입명부 앱은 QR코드 인식 기능 및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 서버와 상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야 함
 - (WiFi 사용 권고) 가급적 시설내 설치된 WiFi와 연결을 권고하며, 시설 출입구 등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할 곳에서 WiFi로 네트워크 연결을 추천함*
 - * 단, QR 코드 인식용 단말기(전자출입명부 앱이 설치된 단말기) 자체에서 LTE 혹은 5G를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음
 - (Hot-spot 기능 활용 가능) 시설 외부에서 입장관리를 수행하는 관계로 WiFi 연결이 불가능할 경우, 방역관리자 혹은 직원 휴대폰의 hot-spot 기능을 동작하여 QR 코드 인식용 단말기가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음

다. 시설관리자용 앱설치 절차 (6.10일 이후 가능)

○ 삼성폰 등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Google Playstore, iPhone, iPad 등 iOS 사용자는 Apple Appstore에서 '전자출입명부관리 App'을 찾아 기기(안드로이드 6.0 이상 혹은 iOS 11 이상)에 설치하여야 함



① Google Playstore(안드로이드 사용자) 또는 Apple Appstore(iOS 사용자)에서 '전자출입명부(KI-Pass)'앱 설치



② 회원가입 버튼 클릭



- ③ 동의버튼을 모두 클릭(각 동의 항목을 자세히 살펴볼 경우 해당 박스를 클릭하면 동의내용이 화면에 표시)
- ④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 단, 시설 방역관리자가 대표자를 대신하여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도 무방함.
- ⑤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고, 시설이 위치한 주소를 정확히 입력
- ⑥ 주소검색 이후 상세주소(예, 〇〇빌딩 3층 303호) 입력
- ⑦ 사업자 등록증 클릭
- ⑧ 사업자 등록증을 촬영하거나, 기존 촬영된 이미지를 선택하여 입력 가능
- ⑨ 등록 버튼 클릭



⑩ 휴대폰 본인인증 하기 버튼 클릭

[이후 휴대폰 문자발송을 통한 본인인증 혹은 PASS 앱을 통한 간편인증 혹은 기타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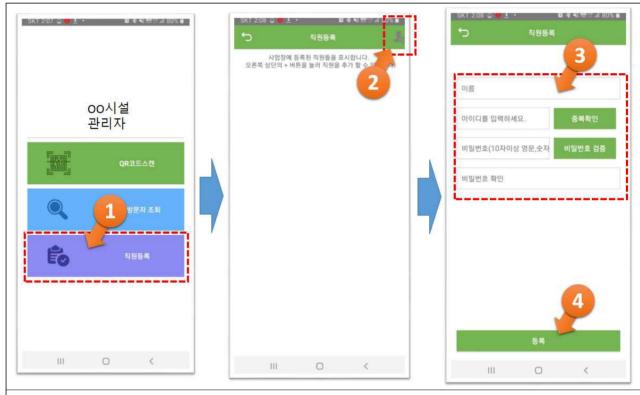
[본인 인증 완료 후, 시스템에서 인증되었습니다. 메시지 표시]



- ① 본인인증으로 확인된 가입자의 이름 및 생년월일, 전화번호가 출력(편집 불가)
- ⑩ 사용하고자 하는 ID (중복확인 버튼을 눌러 중복여부 확인 필요) 및 비밀번호 등록
- ③ 이후 하단 부분의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아이디와 함께 회원등록 안내화면이 나옴
- [이후 등록한 업체명, 대표자 실명 등이 상단에 포함된 메인페이지 화면이나옴]

라. 직원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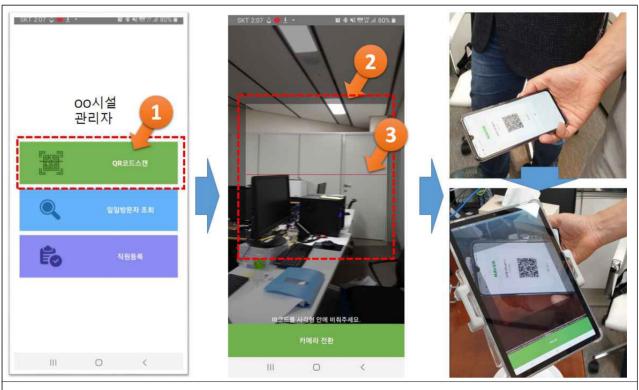
○ 각 시설의 대표자 등록(앱설치, 본인인증 및 회원등록 완료)이 완료되었을 경우, 직원(또는 출입구에 설치된 단말기)을 추가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출입구가 여러 개일 경우, 해당 출입구 마다 단말기 설치(거치) 및 방문자가 스스로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를 권고함



- ① 메인페이지(로그인 후 첫 번째 화면)에서 직원등록 클릭
- ② 직원등록 페이지가 열리며, 2번 사람모양 아이콘 클릭
- ③ 직원의 실명 및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직원 스스로 입력하게 하기보다는 대표자가 아이디를 순차적으로 지정하고,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방법 추천)
- ④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절차 완료
- * 매일 영업 개시 전 각 단말기의 앱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 및 업데이트 설치 권고(앱 실행시 확인 가능)

마. 시설관리자용 앱을 활용한 입장 절차

- 스캔에 사용되는 휴대폰(혹은 태블릿)은 통화가 어려울 수 있고, 쉽게 방전될 수 있으므로, LTE, WiFi 등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에 전원을 상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고함
- 휴대폰(혹은 태블릿)의 전면 카메라 혹은 후면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전면카메라 사용시 QR 코드는 약 30cm의 간격을 두어 스캔하여야 원활한 인식을 수행할 수 있음



- ① 로그인 완료 후 QR코드 스캔 버튼 클릭
- ② 가운데 투명한 부분 내 ③ 줄 부분에 입장객 QR 코드 스캔 [스캔이 완료될 경우, 인증되었습니다. 음성메시지 송출] [캡쳐한 QR 코드 등으로 입장을 시도할 경우, 인증이 거부되었습니다. 음성메시지 송출]